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시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1071

제안일자 : 2019.10.16 제 안 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○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두 개 조문으로 분리되어, 이 를 하나의 조문인 제6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통합하고, 그에 따른 조문 순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동하여 통합하고 (안 제6조제 3항).
- 이에 따른 조문 순서를 조정함.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시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.

- 제1조 중 "제51조 제1항 8호의2, 8호의3"을 "제51조제1항제8호의2, 제8호의3"으로 한다.
- 제2조제1항제1호 중 "2호"를 "제2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2호"를 "제2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3 제2항 12호 내지 15호"를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'영'이라 한다) 제42조의3제2항제12호 부터 제15호까지"로 한다.
  - 2. "협상대상지"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51조제1항제8호의2, 제8호의3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(이하 '도시계획 조례'라고 한다)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.
-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세부적인 운영시기 및 방법은 공공측 협상단과 민간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9조 제1항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2항"를 "영 제25조제2항"으로 한다.

-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시장은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제11조를 삭제하고,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2 조까지로 한다.
- 제12조(종전의 제13조)의 제목 "(마스터플랜 공모)"를 "(기본구상안 공모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마스터플랜"을 "기본구상안"으로 한다.
- 제13조(종전의 제14조)제1항 중 "제12조"를 "제11조"로 한다.
- 제17조(종전의 제18조) 중 "제출할"을 "제출한"으로 한다.
- 제18조(종전의 제19조)제1항제1호 중 "제14조"를 "제13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16조"를 "제15조"로 한다.
- 제19조(종전의 제20조)제2항 중 "별도로 정"을 "정"으로 한다.
- 제20조(종전의 제21조)제1항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30조 각호"를 "영 제30조 각 호"로, "토지가치를 기준으로"를 "토지가치의 범위 내에서"로 하고, 제3항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2조의3"을 "영 제42조의3"으로 하며,같은 조 제4항 중 "시장이 별도로"를 "시장이"로 한다.
- 제21조(종전의 제22조)제3항 중 "제18조"를 "제17조"로, "건축법 제 11조 제7항 제2호"를 "「건축법」 제11조제7항제2호"로 하고, 제 4항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"을 "법"으로 한다.
- 제22조(종전의 제23조)제1항 중 "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정한다."를 "시장이 정한다('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'으로

칭한다)"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제1항 8호의2, 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환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기

- 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(이하 "사전협상"라 한다)"이란 <u>2호</u>의 협상대상지에 대하여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및 효율적인 토지 개발 또는 시설 이전·재배치를 통한 토지이용 합리화 등을 위해 개발계획 등을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협상대상지"란 「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 8호의2, 8호의3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

	l ·	0	Ľ	
제	1조(목적)			
				<u>제51조</u>
	제1항제8호의2,	제8	호의3-	
			- — — — —	
ᆀ	· 2조(정의) ① -			
^II	2年(78円) ① 			
	<u>.</u>			
	1			
				제2호

入

저

아

2. "협상대상지"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51조제1항제8 호의2, 제8호의3 및 「서울특별 시 도시계획 조례」(이하 '도시 계획 조례'라고 한다) 제16조제4

<u>다.</u>	<u>항에 해당하는 무지로서 제9소</u>
	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.
3. "민간"이란 <u>2호</u> 의 협상대상지	3 <u>제2호</u>
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	
지의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	
수립이나 변경의 입안 등을 제	
안한 주민을 말한다.	<b>.</b>
4. "공공기여"란 사전협상에 따른	4
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	
획에 따라 <u>「국토의 계획 및 이</u>	
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	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
조의3 제2항 12호 내지 15호에	<u>하 '영'이라 한다) 제42조의3제2</u>
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	<u>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</u>
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	
제6조(협상조정협의회) ①・② (생	제6조(협상조정협의회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신 설>	③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
	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
	으로 하되, 세부적인 운영시기 및
	방법은 공공측 협상단과 민간측
	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.
제9조(공공기여 산정기준) ①	제9조(공공기여 산정기준) ①
(「국토의 계획	영 제25조제2항
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	
	<b>.</b>
	제10조(사업제안서 제출) ①・②

(생략)

<신 설>

제11조(협상조정협의회 운영) 협상 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 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 되, 세부적인 운영시기 및 방법은 공공측 협상단과 민간측 협상단 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2조 (생략)

제13조(마스터플랜 공모) ① 창의적 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협상 대상지 선정 후 건축계획 등을 포 함한 <u>마스터플랜</u> 공모(이하 "공모 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4조(협상) ① 협상은 제12조의 협상의제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 으로 하되, 협상의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포괄적 협상으로 진행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u>제15조</u> ~ <u>제17조</u> (생 략)

<u>제18조(</u>도시관리계획 결정) 시장은 <u>제17조(</u>도시관리계획 결정) ------민간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를 -----

(제정안과 같음)

③ 시장은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한다.

<u><삭 제></u>

제11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
제12조(기본구상안 공모) ①
<u>기본구상안</u>
② (제정안과 같음)
<u>제13조</u> (협상) ① <u>제11조</u>
② (제정안과 같음)
제14조 ~ 제16조 (현행 제15조부터

제17조까지와 같음)

제출할 때(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의제하는 인·허가의 신청을 한 때를 말한다)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수 있다.

- 제19조(협상결과의 재검토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협상중단, 협상결과 무 효 등의 조치(이하 "재검토"라 한 다)를 할 수 있다.
  - 1. <u>제14조</u>의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
  - 2. <u>제16조</u>에 따른 협상완료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협상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
  - 3. (생략)
  - ②·③ (생 략)
- <u>제20조</u>(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) ① (생 략)
  - ②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및 개발 사업의 실현 등을 위해 공공기여 시설의 계획기준,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제공기준 등을 <u>별도로 정</u> 할 수 있다.

제21조(공공기여 산정기준) ① 용도

<u>제출한</u>
1. <u>제13조</u>
2. <u>제15조</u>
3. (제정안과 같음)
②・③ (제정안과 같음)
제19조(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)
① (제정안과 같음)
②
<u>정</u>
<u>.</u>
제20조(공공기여 산정기준) ①

지역의 변경(「국토의 계획 및 이	<u>영 제30조 각</u>
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	<u>ই</u>
<u>각호</u> 의 세분 또는 변경 및 제30조	
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	
을 포함한다)에 따른 공공기여량	
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 6	
에 상당하는 <u>토지가치를 기준으</u>	상당하는 <u>토지가치의 범위 내</u>
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<u>에서</u>
② (생 략)	② (제정안과 같음)
③ <u>「국토의 계</u>	③ 영 제 <u>42조의3</u> -
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	
제42조의3	
<u>.</u>	
④ 공공기여 산정과 관련된 세부	4
기준 및 운영방법 등은 <u>시장이 별</u>	<u>시장이</u>
<u>도로</u> 정한다.	
제22조(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)	제21조(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)
① · ② (생 략)	①·② (제정안과 같음)
③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	③
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	
우에는 <u>제18조</u> 에 따른 도시관리	<u>제17조</u>
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, <u>건축</u>	<u>「건축</u>
<u>법 제11조 제7항 제2호</u> 에 따라 건	<u>법」 제11조제7항제2호</u>
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	
조치를 할 수 있다.	
<b>4</b>	4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	<u>법에</u>

<u>관한 법률」에</u>	
<u>제23조</u> (운영지침) ① 이 조례에 규	<u>제22조</u> (운영지침) ①
정된 사항 이외에 사전협상 운영	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도시</u>	<u>시장</u>
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	이 정한다('도시계획변경 사전협
<u> 정한다.</u>	<u>상 운영지침'으로 칭한다)</u> .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 제8호의2,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(이하 "사전협상"라 한다)"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하여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및 효율적인 토지 개발 또는 시설 이전·재배치를 통한 토지이용 합리화 등을 위해 개발계획 등을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협상대상지"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51조제1항제8호의2, 제8호의3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(이하 '도시계획 조례'라고 한다)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제9조에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.
  - 3. "민간"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지의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의 입안 등을 제안한 주민을 말한다.
  - 4. "공공기여"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

- 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'영'이라 한다) 제42 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정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제2장 협상조직

- 제4조(민간측 협상단)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측 당사자로서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로 하고,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3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제5조(공공측 협상단) ① 시장은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 ·검토하기 위하여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② 공공측 협상단은 사전협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(부이사관 이상)을 협상대표자로 하여 3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제6조(협상조정협의회) ①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 공측 협상단간 이해를 교환 및 중재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 하여 협상대상지 별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협상조정협의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민간측 협상단
  - 2. 공공측 협상단
  - 3. 외부 전문가 :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설치 운영중인 도시계

- 획위원회,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, 건축위원회 등에 소속된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③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세부적인 운영시기 및 방법은 공공측 협상단과 민간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7조(협상조직 운영 등) ① 시장은 관련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·협의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  - ③ 협상단, 협상조정협의회, 협상정책회의 등 협상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3장 협상절차

- 제8조(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)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협상대상지 선정)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 동위원회(이하 "공동위원회"라 한다) 자문을 거쳐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 필

-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 지를 선정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조건을 부과하여 협상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민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업제안서 제출) ① 민간은 제9조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개발계획(안) 협상제안서 및 요약서
  - 2. 사업계획서
  - 3. 공공기여계획서(공공기여 총량,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 등에 한함)
  - 4. 건축계획서
  - 5. 각종 영향성 검토서
  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관리계획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있다.
  - ③ 시장은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상의제 선정) ① 시장은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고 예측 가능한 협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협상의제는 도시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부합하여야 하며, 이를

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협상의제를 사전에 정할 수 있다.

- 1. 입지여건 등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
- 2. 개발계획(개발방향, 주용도, 기능, 건축계획, 교통계획 등)의 적정성
- 3. 공공기여(공공기여 제공시기, 제공방법 등)의 적정성
- 4. 기타 사전협상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12조(기본구상안 공모) ①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협상대상지 선정 후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공모(이하 "공모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  - ②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3조(협상) ① 협상은 제11조의 협상의제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협상의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포괄적 협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.
  - ② 협상대상지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기여시설은 민간과 협의하여 정하며, 협상대상지 박 공공기여의 종류, 위치, 규모 등의 공공기여계획은 시장이 정한다.
- 제14조(감정평가 시행) ① 감정평가는 개발계획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한다.
  - ②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.
  - ③ 시장은 공공기여시설의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한 감정평가 절차 및 방법 외에 감정평가 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별도

로 정할 수 있다.

- 제15조(협상결과 통보)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관한 협상을 완료한 경우, 협상결과를 민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) 민간은 협상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
  - 2.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도서(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포함)
  - 3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- 제17조(도시관리계획 결정) 시장은 민간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한 때(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의제하는 인·허가의 신청을 한 때를 말한다)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수 있다.
- 제18조(협상결과의 재검토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중단, 협상결과 무효 등의 조치(이하 "재검토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  - 1. 제13조의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
  - 2. 제15조에 따른 협상완료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협상 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
  - 3. 기타 협상결과 등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
  - ② 제1항 재검토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거나 협상결과가 무효로 되는 등의

경우에는 상호간에 일체의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방법 및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# 제4장 공공기여 기준

- 제19조(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) 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따른 계획이득인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및 개발사업의 실현 등을 위해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,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제공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.
- 제20조(공공기여 산정기준) ① 용도지역의 변경(영 제30조 각 호의 세분 또는 변경 및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)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 6에 상당하는 토지가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 이외에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폐지 등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시장이 정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공공기여의 총량은 영 제42조의3제2항 제12호 후단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로 한다.
- ④ 공공기여 산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. 제21조(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) ① 민간은 사업의 준공(또는 획지별 사업의 준공 중 빠른 시기를 말함) 전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, 협상결과 사업의 준공 전·후 특정시점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정한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.

- ②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시설물 관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, 「건축법」 제11조제7항 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 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·군계획시설 등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
- 제22조(운영지침)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('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'으로 칭한다)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결정·처분·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